

##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른 가스사고 해설**



1

#### 반밀폐식 보일러의 급·배수설비 설치기준

반밀폐식 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강제 배기식

## 설치기준 산원자원부고시 제4-2-3조 제2호라목 (자연배기식 가스보일러에 강제배기팬 부착금지)

1 | 기주해설

각 제배기 패를 볼 창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가스보일러의 성능이 변하므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보일러는 제조시 각종 안전 및 성능 시험을 실시하게 되며,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산·판매가 된다. 따라서, 자연배기식 가스보일러의 경우 자연배기식 조건에 맞는 시험만을 실시하였으므로 강제배기팬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 자연배기식 가스보일러에 강제배기팬을 임의로 부착한 경우를 보면 가스보일러와 강제배기팬이 서로 연동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질식 사고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강제배기팬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단계검사를 받고 제조된 자연배기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가능하며, 부착은 명판에 접속 가능한 강제배기팬의 사양(제조자 및 형식호칭)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하여 접속이 가능하다. 이때, 강제배기팬을 부착한 가스보일러는 달여히 강제배기식 보일러로 구분한다.

### 참고자료

#### 가스용품의 설계 단계검사 대상

(액법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가목)

- ①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당해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 ② 가스용품의 수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 ③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 중 성능의 변경을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가 변경된 경우→자연배기식 가스보일러에 강제배기팬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되는 관련 규정이다.
- ④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매 5년이 경과한 경우

## 2 | 관련 사고 사례

### 전용보일러실 미설치로 인한 CO중독사고(2000년 2월 경기의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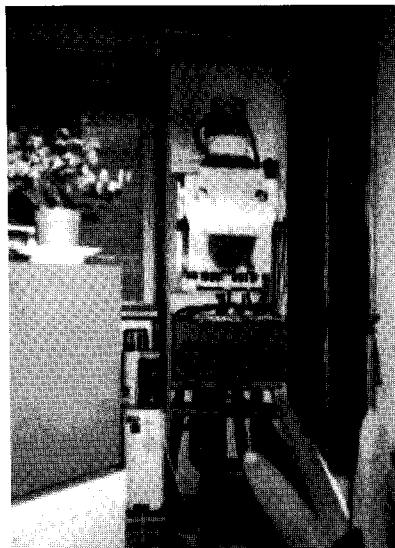
#### ▶ 사고내용 및 원인

자연배기방식 가스보일러에 배기팬을 부착한 (CF+FAN) 형식의 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이 아닌 주방(실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배기팬 고장으로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CO가스에 중독,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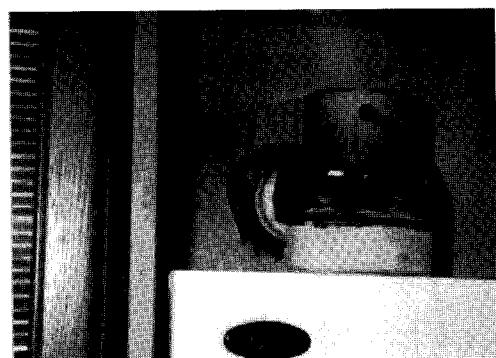
#### ▶ 문제점

- ① 전용보일러실 미설치
- ②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미비

#### [강제배기팬을 부착한 가스보일러(거실에 설치) ]



[고장난 강제배기팬 ]



**1****밀폐식 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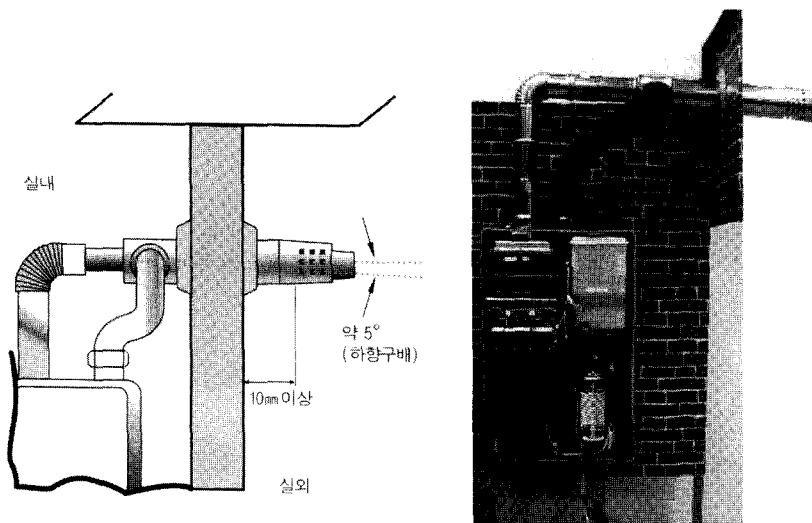
밀폐식 보일러의 급.배기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치기준****산원자원부고시 제4-2-4조 제1호가목 (급.배기톱의 기울기)**

급.배기톱은 옥외에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할 것.

**1 | 기준해설****기울기를 주어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

급.배기통에 응축수가 고이거나 빗물이 유입으로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림의 예와 같이, 보통 외부로 약  $5^{\circ}$  정도 기울기를 두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급.배기톱 설치 예 ]****설치기준****산원자원부고시 제4-2-4조 제1호나목 (급.배기톱의 주의)**

급.배기톱의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는 것일 것

## 1 | 기준해설

###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이유

급.배기톱 주위의 장애물은 정상적인 급.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애물이 가연물인 경우에는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물과의 이적거리 등 상세한 내용은 급.배기방식별 해설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2 | 관련질의 회신

### 가스보일러의 급.배기톱 주위 장애물 설치에 관한 질의회신

#### Q 질문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강제급.배기식(FF) 가스보일러 급.배기통이 미관상 좋지 않아, 구명을 여러 개 뚫은 알루미늄 및 스테인레스 스틸 판으로 커버(cover)를 만들어 급.배기톱을 덮을 수 있는지 여부

#### A 답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4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급.배기톱의 주위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므로 급.배기톱에 커버(cover)를 설치할 수 없음  
(2003. 8. 22 안전공사 시설 610-1780)

#### 설치기준

#### 산원자원부고시 제4-2-4조 제1호다목 (눈내림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눈내림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급.배기톱의 주위의 적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1 | 기준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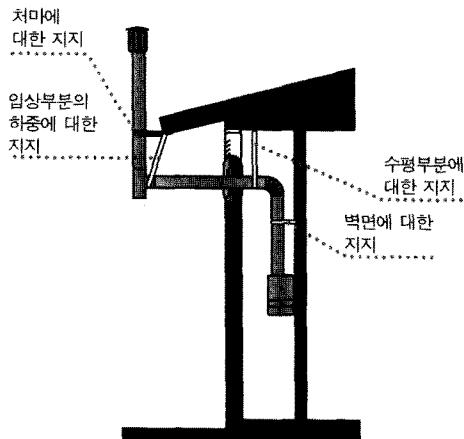
### 1) 적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 이유

적설로 인하여 급.배기에 영향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눈으로 인하여 문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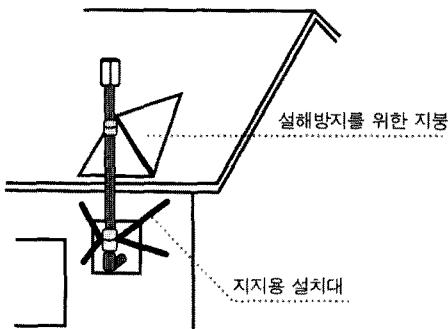
### 2) 설치방법 예

- ① 배기통 지지용 설치대를 사용하여 보통 1.5m~2m간격을 배기통을 고정하여야 한다.
- ② 배기통은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건물 밖으로 나오는 배기통의 부분이 경사진 곳에 세워질 때에는 낙설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설해방지용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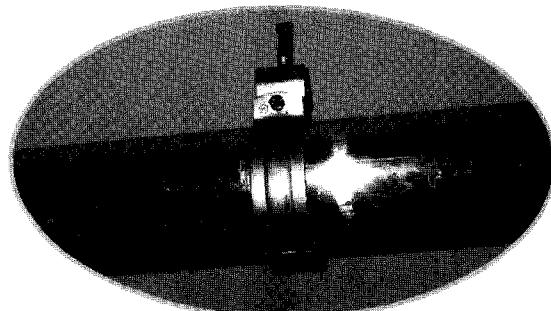
[ 배기통 고정 예 ]



[ 설해방지용 지붕설치 예 ]



[ 고정장치의 예 ]

**설치기준**

산원자원부고시 제4-2-4조 제1호라목 (급.배기톱의 최대 연장길이)

급.배기톱의 최대 연장길이는 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한 최대연장길이 이내이고 급.배기톱은 바깥벽에 설치할 것.

**1 | 기준해설****1) 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한 최대연장길이 이내이어야 하는 이유**

강제급.배기식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배기팬의 성능 등을 고려한 보일러의 특성에 따라 급.배기톱의 길이를 보일러 제조사에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일러의 명판 및 취급 설명서에 기재된 최대연장길이 이내로 급.배기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스보일러 제조사에서

는 최대연장길이를 3~5m, 굴곡분은 2~3개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2) 급.배기통을 바깥벽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

급.배기통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때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방되고 통풍이 양호한 옥외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배기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보일러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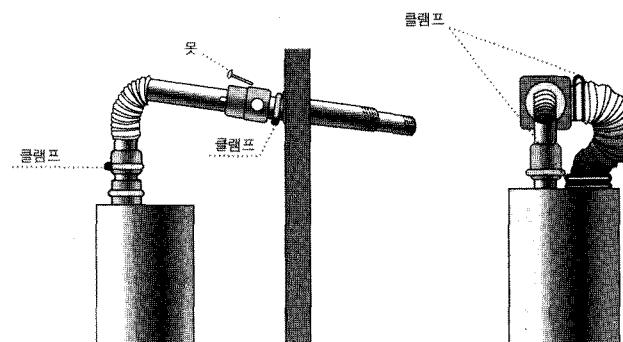
설치기준	산원자원부고시 제4-2-4조 제1호라목 (고정부착)
급.배기통과 부착된 벽 및 보일러 본체와 벽의 접속은 단단하게 고정 부착할 것.	

### 1 | 기준해설

#### 단단하게 고정부착 하여야 하는 이유

가스보일러는 일반적으로 내열성이 있는 금속으로 제작하고 있어 무게가 많이 나간다. 또한, 보일러 내부의 펜과 순환펌프의 작동으로 보일러 사용 중에는 진동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일러는 무게와 진동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하게 고정부착하여야 하며, 급.배기통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일, 가스보일러의 무게, 진동 및 외부의 충격 등으로 급.배기통의 이음부가 이탈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CO중독사고와 직결되므로 가스보일러를 단단히 고정부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급.배기통 고정 예 ]



#### [ 클램프의 예 ]

